

#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 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 
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 
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는 장애를 “신체적·정신적 손상  
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  
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”로 정하고 있어, 장  
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  
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,

본 조례는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본 조례 개정안은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·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, 미등록 장애인들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.

한편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바, 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.

□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“장애인”의 정의를 규정하고,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·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

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